

1. 목적

본 규칙은 제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가 협력회사, 고객사 등 제반 이해관계자들과의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본 규칙은 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3.1 비윤리행위

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준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, 통상 윤리 경영규칙(MS-A16)을 위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.

3.2 신고보상 대상자

비윤리적 행위의 신고를 통해 보상 및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회사의 임직원과 회사와 관계된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로 한다.

4. 책임과 의무

- (1) 임직원은 비윤리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윤리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(2) 임직원이 직무관련 부당행위를 강요 받거나 타인의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윤리경영실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.
- (3) 임직원의 제보자 신분누설 및 색출행위는 금지된다.

5. 신고방법

- (1) 비윤리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사이버제보, E-mail, 유선/Fax, 우편, 방문, 기타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.

- (2)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고 6 하 원칙에 따라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신고시점에 현재 진행 중인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.

6. 보상금 지급 기준

보상금 지급기준은 (부표 1)과 같다.

7. 보상금 지급 제외

- (1)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
- (2)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개인적 비윤리행위 신고시
단, 공금횡령, 회사자산 절도 등과 같이 회사의 자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 가능
- (3)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윤리경영실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
- (4)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
- (5)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
- (6)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(공정개선, 개선제안 포상관련 사항 등)
- (7) 윤리경영실 직원이 신고한 경우
- (8) 신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8. 보상금 환수

보상금 지급 후에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,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보상금을 환수 할 수 있다.

9. 보상 및 감경 심의

- (1) 윤리경영실 팀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‘신고보상 심의위원회’에 보상 및 감경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 - 1) 비윤리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금액 확정
 - 2) 비윤리행위 가담자의 감경 여부와 정도
- (2) 보상 및 감경 심의는 요청일로부터 1 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, ‘신고보상 심의위원회 운영’ (부표 2)에 따라 실시한다.

10. 제보자 신분보호

- (1)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은 윤리경영실장이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
- (2) 제보자 신분노출 및 색출 금지
 - 1) 임직원이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자 및 조사협력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 및 조사협력자의 신분을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.
 - 2)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 부서,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윤리경영실 등에 제보자 신분을 문의하거나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 된다.
 - 3) 윤리경영실 직원은 상기 2)항의 문의를 받는 경우, 즉시 해당 질문이 본 규칙에 의거 금지된 행위이며,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여야 한다.
 - 4) 윤리경영실은 제보자 및 조사 협조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만약 비윤리행위 적발과 제보자의 신분보호가 배치될 경우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우선시 한다.
 - 5) 회사의 임직원은 제보자에게 제보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, 업무상 및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 - 6) 회사의 임직원이 상기 1)에서 5)항을 위반하여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윤리경영실은 그 노출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7) 제보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윤리경영실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.

8) 제보자로부터 신분보호를 요청을 받으면 윤리경영실에서는 제보자가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직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실에 근무토록 할 수 있다.

11. 비밀유지 서약 (부표 3)

- (1) 회사의 모든 임원은 정당한 제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서약 의무가 있다.
- (2) 회사의 시스템개발팀은 제보시스템과 관련하여 관리자 권한 제한 및 비밀유지서약의 의무가 있다.
- (3) 제보와 관계되는 주요 부서(윤리경영실, 인사팀, 총무팀) 팀원들은 비밀유지서약 의무가 있다.
- (4) 상기 서약의무 및 보안준칙 위반시 윤리경영실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해야 한다.

12. 보복행위 금지

- (1) 제보자는 제보를 이유로 피제보자 또는 관련 제 3 자로부터 업무상 불이익 등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윤리경영실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- (2) 윤리경영실은 업무상 불이익 등 보복행위를 조사하여 문제가 된 임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.
- (3) 윤리경영실은 필요시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 등 보복을 받고 있지 않은 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사한다.

13. 기타

본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'신고보상 심의위원회'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.